

#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,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##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세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”로, “고취시켜”를 “고무하여”로, “기여함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모범납세자: 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
- 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

제2조제2호 중 “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”을 “전자납세자: 서울특별시세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유공납세자 :”를 “유공납세자: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세”를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과”를 “제2항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세·타”를 “국세 및 다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,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<u>고취시켜</u>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<u>기여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선발)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발한다.</p> <p>1. 모범납세자 : <u>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“지방세”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무하여</u> ----- ----- <u>이바지함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선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모범납세자: <u>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</u>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<u>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p> <p>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</p> <p>4. 삭 제</p> <p>제3조(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, 전자고지·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의 배제) 공공기관의</p>	<p>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</p> <p>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</p> <p>2. 전자납세자: 서울특별시세 등을 -----</p> <p>3. 유공납세자: -----</p> <p>제3조(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서울특별시세 등 ----- 범위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의 배제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3조제4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, <u>제2항과</u> 제4항의 지원내용을 배제한다.</p> <p>1. <u>신</u>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</p> <p>2. <u>국세·타</u>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</p> <p>제5조(심의) 위원회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시장</u>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항</u> 및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국세 및 다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심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서울특별시장</u> ----- -----</p>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제1항제1호

**3. 미첨부 사유**

예상되는 비용(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)이 연 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**4. 작성자 : 재무국 세무과 세무6급 박배호 (☎ 2133-3388)**